

4. 제안경위

- 2005.08.22 : 「(주)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」 입안 제안
- 2005.09.12 : 「(주)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」 입안 결정 통보
- 2005.09.14 : 「(주)조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」 결정 신청
- 2005.09.14 : 열람공고(2개사 신문공고)
- 2005.10. : 지방의회 의견 청취

5. 제안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(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(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) 고성군계획조례 제7조(주민의견 청취)에 의한 고성군의회 의견제시

6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(주)조은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군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번 공장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이 지구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음.
-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위치는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26-2번지 일원으로 계획 면적이 36,773㎡로서 기존 공장계획 면적을 포함 하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30,000㎡ 이상에 해당되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공업용지, 공공시설용지, 녹지용지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접하였음.
- 산간오지 지역으로 주변에 주택은 약간 산재되어 있고 계획중인 공룡골프장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음.
- 산업형 제2종지구의 입지조건은 양호하다고 사료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장이 입주하여 주변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에 착안하여 심도있는 심사후에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.

8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고성군관리계획 (주)조은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위치도 좋고 주민의견도 긍정적인 부분은 좋지마는 군에서 지구단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
- 문 : 기존 농공단지 등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었으나 입주후에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 그리고 지구내 주차용지 확보면적이 부족하다 대책은 ?
- 답 : 제2종지구단위 결정시 조건을 제시하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.
- 문 : 공룡골프장계획이 시행될때 공장운영에 관계없는가 ?
- 답 : 골프장 운영과 별개의 사안으로 문제가 없습니다.
- 문 : 주변환경의 변화와 환경문제, 지역주민의 여론 등의 발생을 예측하여 각별한 검토후 지구결정 바람.
- 답 : 그렇게 하겠습니다.

9. 토 론 : 없음

10. 심사결과

- 2005. 10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제출한 것을 가결하였음.